52 원 안

의안번호	제 533 호
의 결 년월일	1971. 5. 28. (제 35 회)

의결사항

第35回次官會議(5/29)에서 원안通過

영 예 수 여 (터키군 최고사령부 육군대령 빈디트. 아마타야쿤 외 1명 (Bundit Amataya KULRta))

제 출 자	국무위원 서 윤 교 (총무처장관)
제출년월일	1971. 5. .

1104

1. 의결주문

다음 사람들에게 별지 (훈장증안)
와 같이 보국훈장삼일장을 수여하
기로 의결한다.

소 속	직 위	성 명	훈 격
1) 크메르 공화국 최고사령부	육군대령	반디트 아마리 아쿤 (Bundit Amata akulrta)	보국훈장 삼일장
2. "	"	팔 아카니불 (pat AKkanibut)	"
	(이상 2명)		

2. 제안이유

한·태양극간에 군사유대강화 및 대공정보자료의 교환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공이 지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조문 (상훈법)

제15조 (보국훈장)

(이하생략)

나. 예산조치

1971년도 기정예산에서 지변함.

다. 합 의

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함.

라. 기 타.

1991. 6. 1. 수여예정 끝.

1107

제 호

훈 장 증 (안)

소속

지위 성명

귀하는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에
이바지한 바 크므로 대한민국헌법의
규정에 의하여 다음 훈장을 수여함.

보국훈장 삼일장

1971년 월 일

대통령 박 정 희

국무총리 백 두 진

2-5.

1108

2-6 E

이 증을 보쿠툰장 장부에 기입
함.

총무처장관 서 일 교